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6.

발 의 자 : 전용기 · 문진석 · 민병덕
전진숙 · 손명수 · 황운하
송옥주 · 임호선 · 양문석
이용선 · 윤종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.

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방대 등이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가구·세대의 주거시설 또는 건축물의 출입문 등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파괴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긴급 수리·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평온한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·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

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제6항 신설).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 전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다.

1.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·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경우 손실을 입은 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2(손실보상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9조의2(손실보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 전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다.</u> <u>1.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·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2.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경우 손실을 입은 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